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533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당연직이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당연직이사의 임기가 ‘재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음에 따른 문구 정비
- 영등포구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이사의 직위에 관하여 정비

나. 임직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조항 정비(안 제11조)

-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요건을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

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삭제(안 제20조)

-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

라.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1조)

- 공단의 직제 규정 반영하여 간사의 직위를 ‘부서장’으로 현행화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5. 5. 1. ~ 5. 2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

-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기업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2025.1.7.부로 일부 개정됨.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법 개정과 발맞춰 우리 구(區) 시설관리공단 직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한 규정 정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삭제, 임원추천위원회 간사 관련 조항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함.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이사)</b></p> <p>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의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p>	<p><b>제9조(이사)</b></p> <p>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b>당연직 비상임이사</b>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b>임원추천위원회</b>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의 <b>공단업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주차사업 부서 소관 국장</b>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p>

- 안 제9조에서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만 재직기간으로 함을 명확히 하는 것과 당연직에 대한 규정을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설관리공단 임원 현황】

상임		비상임		
<b>이사장</b>	- 구청장 임면 - 임기3년, 1년단위 연임	<b>비상임 이사</b>	<b>당연직 비상임이사</b>	- 공단업무총괄부서소관국장 주차사업 부서 소관 국장 - 재임기간이 임기
<b>상임이사</b> ※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 이사장 임면 - 임기3년, 1년단위 연임		<b>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b>	- 구청장 임면 - 임기3년, 1년단위 연임
		<b>감사</b>		- 구청장 임면 - 임기3년, 1년단위 연임

현 행	개 정 안
<p><b>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b></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생략)</p> <p>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b>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b></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다. (현행과 같음)</p> <p>② 공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p> <p>2.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③ 공단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규정 외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규정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b>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b></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p> <p>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p> <p><b>제21조(회의)</b></p> <p>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이 된다.</p>	<p><b>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b></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삭제) (현행과 같음)</p> <p><b>제21조(회의)</b></p> <p>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한다.</p>

- 안 제20조에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담당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이사 조항 정비,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의 조례 명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항 삭제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먼저, **당연직 이사 조항 정비** 관련하여 비상임이사가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는 당연직과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구분 없이 비상임이사를 포괄적으로 표기하고 있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여 적합성을 높이고, 소관 업무명을 기재하여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명이 변경될 때마다 소관 국장 명칭을 개정해야 하는 점을 제거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규정의 위임만 명기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직원 채용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공단 직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 상위법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결격 사유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아울러 2025.1.7.부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그간 자체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에 따라, 중요 기반 시설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 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를 살펴보면 위원 구성에 대하여 별도의 결격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도 “임원과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만 규정할 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에 대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공기업법

###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생략)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생략)
- ④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생략)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3 지방공무원법

###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6. 13.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534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정책대상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운영 점포 밀집기준 완화(안 제2조)
- 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요건 완화 및 지정절차 근거 신설(안 제3조)
- 다. 지정취소 요건 구체화 및 지정취소 절차 근거 신설(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구 ↔ 중기부): 협의완료('25.3.)
-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인권영향평가: 대안어 제시('보좌하고' → '도와 일을 처리하고') 수용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5. 5. 1. ~ 5. 2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규정 후,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區)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음.
- 202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안」 2)을 마련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협의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고지3)하는 등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한

1)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자율지정 알림」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1617(2023.7.31.)]

3)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73(2024.1.2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배경하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밀집 기준 및 신청 동의 요건 완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의 명문화를 통해 우리 구(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제출됨.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지정)</b>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p> <p><b>제3조(신청 절차)</b>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p>	<p><b>제2조(지정)</b>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u>25개</u>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u>다만, 지역 여건과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u></p> <p><b>제3조(지정 신청 등)</b>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u>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u>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u>상시</u>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u>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u> 이 경우 상점가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p>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기준 (30개 이상 -> 25개 이상)과 신청 동의 요건(1년 이상 영업 -> 상시 영업)을 각각 완화하는 것과 지정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지정 취소)</b>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생략)</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p>	<p><b>제5조(지정 취소)</b>  ①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3. 정당한 사유 없이 <u>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u>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u></p> <p>③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상점가 명칭, 대표(관리자), 소재지,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의 각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④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p>

- 안 제5조에서는 지정 취소 요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는 주체를 추가하여 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 종합의견

- 2023년도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협의(안)<sup>4)</sup>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밀집 기준 완화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하였으나,
- 2024년도에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 예정('25.6. 현재 미개정)이므로 개정

4)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해 협의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 바,

- 2025년 3월 우리 구(區)에서는 용도지역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2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sup>5)</sup>를 마쳤으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안」 및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에 따라 우리 구(區)여건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 지정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 도시규모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적용

구 분		밀집기준 변경(안)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중소도시 (특별도시, 도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농어촌(군 內 읍면동)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5) 중소벤처기업부 「밀집기준 자율지정을 위한 협의요청 회신」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916(2025.3.21.)]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6)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7)에서도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도 청문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 또한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sup>8)</sup>받지 못하여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을 향상하는 등 골목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7)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 8) 【영등포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

연번	명칭	주소	점포수	개설연도
1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선유로47길, 49길, 양평로19길일대 (양평2동)	42개	2021
2	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	디지털로37길 29 (대림2동)	39개	2021
3	셋강두리 골목형상점가	도신로64길, 영등포로72길 (신길1동)	74개	2024
4	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	양평로22길, 선유로51길, 양평로20길, 양평로126일원 (양평2동)	67개	2024

# 참 고 자 료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정의)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3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